

의안번호	2217412
의 퇴 인	권향엽의원
회 답 일	2026.4.14.
추계번호	26B00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u>피보험자격을 취득함</u> (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u>피보험자격을 상실함</u> (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u>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함</u> (제7항)	의무규정
4	안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u>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함</u>(제3항) 1. <u>근로자인 피보험자</u>: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u>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u>(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u>자영업자인 피보험자</u>: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u>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u>	의무규정
5	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u>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u>	의무규정
6	안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름.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함	의무규정
7	안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함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u>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것</u>	의무규정
8	안 제69조의4(기초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u>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u> (제1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 미대상 － 개정안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안 제13조제2항),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안 제14조제2항), 피보험가격에 관한 신고(안 제15조제7항),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가입기간(안 제50조제3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413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 참고로,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명)</td><td>30,629</td><td>36,859</td><td>42,643</td><td>47,604</td><td>53,705</td></tr><tr><td>구직급여 수급 자영업자 수(명)」</td><td>1,495</td><td>2,056</td><td>2,575</td><td>3,248</td><td>3,490</td></tr><tr><td>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td><td>7,212</td><td>9,932</td><td>12,383</td><td>16,768</td><td>18,822</td></tr></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명)	30,629	36,859	42,643	47,604	53,705	구직급여 수급 자영업자 수(명)」	1,495	2,056	2,575	3,248	3,490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7,212	9,932	12,383	16,768	18,822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명)	30,629			36,859	42,643	47,604	53,705																				
구직급여 수급 자영업자 수(명)」	1,495	2,056	2,575	3,248	3,490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7,212	9,932	12,383	16,768	18,822																						
2	안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3	안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4	안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5	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6	안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7	안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8	안 제69조의4(기초일액)																										

2. 상세 사유

- (안 제50조제3항) 현행법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이하 “소정급여일수”)은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직급여와 관련한 소정급여일수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자영업자의 사업 존속기간이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사업 존속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연동하여 소정급여일수의 변화와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58조제1호가목) 현행법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와 이들 중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자의 규모를 추산하여야 하나, 자발적 이직의 여러 사유 중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피보험자의 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산출에 한계가 있음
 - － 즉, 현행법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의 노동시장과 구직급여 수급 행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며, 고용보험통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에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포함되나, 해당 항목에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자영업을 위한 이직자 현황만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함
 - － 참고로, 2026년 2월 고용보험 상실사유별 상실자 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고용보험 상실사유별 상실자 수: 2026년 2월

(단위: 명, %)

구분		개인사정 으로 인한 자진사퇴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으로 자진퇴사	폐업, 도산	경영상 요인에 의한 퇴사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기타	분류불능
남	222,012	147,095	1,501	3,602	25,993	2,462	2,409	34,129	4,407	414
여	238,897	157,413	1,312	6,502	23,398	1,960	1,892	42,145	3,699	576
계	460,909	304,508	2,813	10,104	49,391	4,422	4,301	76,274	8,106	990

자료: 고용보험통계

□ (안 제69조의2) 현행법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영업자에 대한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 개정안 및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413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구직급여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의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
 - 또한,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413호)은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안은 기초일액도 과세소득액에 기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조기재취업수당과 연장급여의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안 제69조의3 및 안 제69조의4) 개정안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피보험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기초일액도 보수액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 과세소득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기초일액 산정 관련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자영업자 구직급여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에 따라 확대될 사업대상자의 규모와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 변화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일액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과세소득액에 기반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지원단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자영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표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행	개정안
피보험기간	1년 이상	6개월 이상
기초일액 산정 방식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른 보수액 기준	과세소득액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